축산법 시행규칙 [별지 제 44호 서식]

발급번호 : 0507-7363

축산물 (돼지) 등급판정확인서

『축산법』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.

2026년 11월 12일

축산물품질평가사 소속 : 충북지원

성명 : 김동찬 (김동찬 25703)

신청인	성 명	김남욱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129-81-30202
	업 소 명	(주)팜스코	업태유형	기타
	주 소	경기도 안성시 제2공단4길 33		
도축장	업 체 명	(주)팜스코	등급판정일자	2026년 11월 11일
	소 재 지	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	043-535-3412	

(단위 : 두)

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	이력번호 및 도체번호	등급
130044305049(2)	1	130044305049(18)	1	130044305049(37)	1
130044305049(3)	1	130044305049(20)	1+	130044305049(38)	1
130044305049(4)	1+	130044305049(22)	1+	130044305049(39)	1
130044305049(5)	1	130044305049(24)	1+	130044305049(40)	1+
130044305049(6)	1	130044305049(25)	1+	130044305049(41)	1+
130044305049(7)	1	130044305049(26)	1+	130044305049(42)	1+
130044305049(8)	1+	130044305049(27)	1+	130044305049(43)	1+
130044305049(9)	1+	130044305049(28)	1	130044305049(44)	1+
130044305049(10)	1	130044305049(29)	1	130044305049(45)	1+
130044305049(11)	1	130044305049(30)	1+	130044305049(46)	1+
130044305049(12)	1	130044305049(31)	1+	130044305049(47)	1+
130044305049(13)	1+	130044305049(32)	1+	130044305049(48)	1+
130044305049(14)	1+	130044305049(34)	1	130044305049(49)	1
130044305049(15)	1+	130044305049(35)	1+	130044305049(50)	1+
130044305049(17)	1+	130044305049(36)	1	130044305049(51)	1+

전체 : 45두 (1+ 등급 : 28 1 등급 : 17 2 등급 : 0 등외등급 : 0)

[redacted]

발급횟수 : 1건 발행일자 : 2026-11-12 10:14:43

※ 이 확인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홈페이지(www.ekape.or.kr) "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" 코너를 이용하여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납품내역은 『축산법 시행규칙』 제 45조 제 4항에 따라 등급판정신청인 또는 매수인이 해당 축산물을 학교나 음식점 납품 등의 사유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.
※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고객지원실(044-410-7000)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10㎜×297㎜ [백상지 80 g/㎡ (재활용품)]

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20.4.16.>

원본대조필

제 충북10-20261111-0013-0 호

도축검사증명서

1. 가 축 의 종 류 : 돼지
2. 두수 및 이력번호(소,돼지,닭,오리만 해당합니다): 80 (130044305049)
3. 중 량 : 지육 7136 kg, 내장 등 기타 1120 kg
4. 작 업 장 명 : (주)팜스코
5. 검 인 번 호 : 충북10
6. 도 축 일 : 2026년 11월 11일
7. 도 축 의 뢰 인 : 주소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575-1
   성명 김남욱 의뢰업소 (주)팜스코
8. 안전관리인증농장(HACCP)에서 출하된 가축 여부 : [ ]여, [O]부
9. 수입소의 경우
   - 수출 국가명 :
   - 검역계류장 도착일로부터 도축일까지 6개월 경과여부 :
10. 검사불합격 식육의 처분 : 폐기(12 kg), 식용 외의 용도전환(0 kg)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11조 제1항 ·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.

2026년 11월 11일

검사관 소 속 :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음성축산물검사소

성 명 : 김진아 (서명 또는 인)

(수의사 면허번호 : 13427)

[redacted]